

양형위원회 출범

-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
- ♠ 신뢰 가득한 형사재판
-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원



2007. 5. 2.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출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I. 양형위원회 정식 출범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양형위원회가 2007. 5. 2. 개회식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함

II. 양형위원회 설립 배경

-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시정
- 합리적인 양형기준 도입 필요

III. 양형위원회 설립 과정

- 대법원은 지금까지 합리적인 양형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
-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와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양형위원회 및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1. 26. 공포되어 2007. 4. 27. 시행되었음

IV. 양형위원회 출범의 의의

1. 사법개혁의 성과

- 양형위원회 제도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과 함께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됨

2. 양형위원회의 위상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임
- 독립성·전문성·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기관임
-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양형정책에 관한 연구·심의기관임

3. 양형위원회 설립의 의미

- 양형기준 설정으로 양형의 균등성·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유사한 범죄·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예방
 - 범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
 -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
 - 형사사법의 투명화·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게 됨
 - 양형기준 공개를 통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참고적 기준 제시로 형사재판업무를 지원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양형의 합리화를 촉진
 - 양형실무의 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됨
 - 형벌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과학적 양형정책 구현
 - 형사재판에서 헌법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됨
 - 평등권·적법절차 원칙 등 헌법과 법의 정신을 양형에 반영
- ▶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

V. 양형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 김석수(金碩洙)

- 1932. 11. 20.생
- 경남 하동 출생
- 프로필

학력	1952년 배재고등학교 졸업 1956년 연세대학교 법정대 졸업 1997년 연세대학교 명예법학박사
경력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3년 ~ 1991년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 1991년 ~ 1997년 대법관 1993년 ~ 1997년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9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0년 ~ 2002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2년 ~ 2003년 국무총리 2003년 3월 변호사

- 1932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위원장께서는 배재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뒤 고시 10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
- 196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1991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1997년 퇴임하실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 법관 인사위원장을 지냈으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재임하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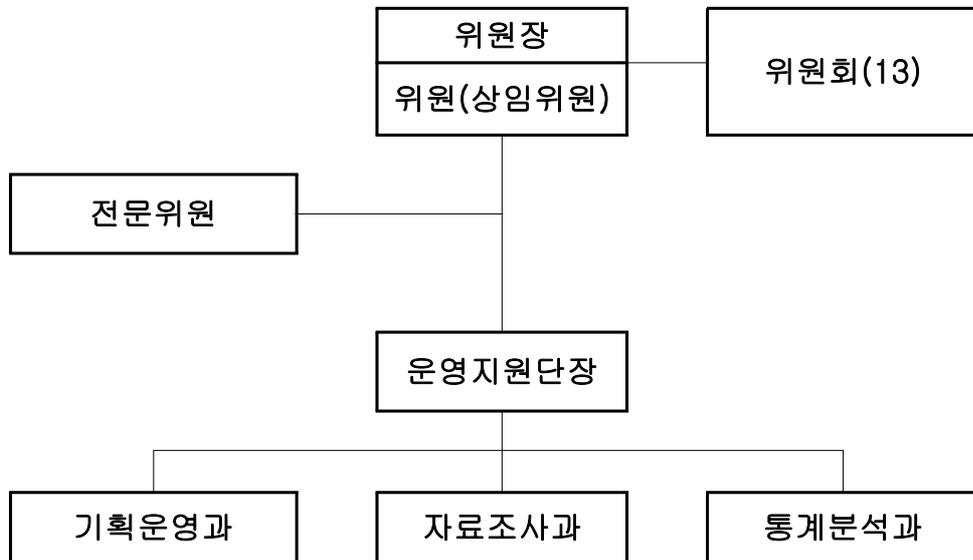
- 2002년 ~ 2003년까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재임하셨음
- 훗날 키에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신사로, 서글서글한 품성, 서민적인 면모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어 법조계에서의 신망이 높음
- 국무총리,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뛰어난 행정업무를 수행하셨음
- 대법관 및 법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시면서도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 사정에도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 판결에 대한 승복도가 높았음
- 대법관 재임 시절 1980년 강제 해직기자 해고무효 판결, 1993년 전국병원노조의 복수노조 신고 허용 판결 등을 하심으로 소수자의 기본권보장을 강조하셨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선거비용 실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선거법 제정의 기초를 닦으셨음
-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청렴하셨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임
- 국민의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재임하는 동안 대통령선거, 대북송금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을 소신 있게 처리하셨음
- 제1기 양형위원회의 원만한 업무수행과 조기 정착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최적임의 법조계 원로

2. 위원

지위	성명	생년월일	기수	비고
위원 (법관)	박 송 하	1946. 3. 8.	연수원 3기	서울고등법원장
	유 원 규	1952. 10. 9.	연수원 9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 기 석	1953. 2. 19.	연수원 1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낙 송	1958. 1. 19.	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홍 경 식	1951. 4. 16.	연수원 8기	서울고등검찰청장
	황 희 철	1957. 6. 2.	연수원 13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 경 재	1949. 10. 30.	연수원 4기	변호사 (전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조 건 호	1951. 1. 27.	연수원 5기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원 (교수)	하 태 훈	1958. 2. 17.	해당 없음	고려대 법대 교수
	한 인 섭	1959. 11. 21.	"	서울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경험)	신 용 진	1957. 1. 13.	"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남 인 순	1958. 11. 5.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상임위원 :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양형위원회 조직도



VI. 향후 양형위원회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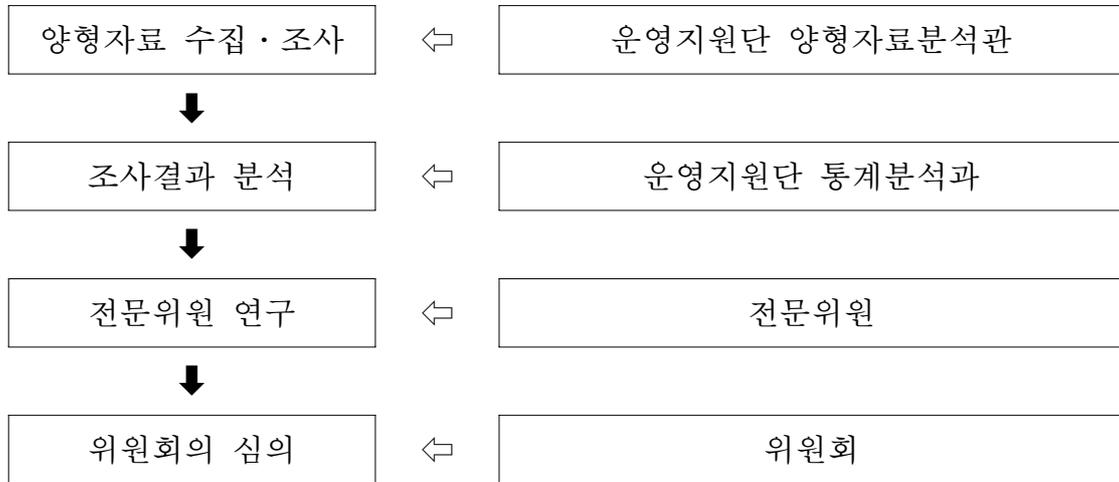
1. 제1기 양형위원회의 중점 사업

- 양형기준 설정 업무에 집중할 계획
 - 법원조직법상 2009. 4. 26.까지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
- 초대 양형위원회로서 업무시스템을 정립하고, 조직의 정착 및 안정화에 노력할 것임

2.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유형

-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개정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제1차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후보군
 - 양형기준 설정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패범죄(뇌물죄 등), 성폭력범죄, 소년범죄, 환경범죄, 선거범죄 등
 - 양형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이 요청되는 살인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사기범죄 등

3. 양형기준 설정 절차 흐름도



4. 양형기준 설정의 목표

- 한국식 양형기준의 정립
 - 외국 양형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우리의 재판현실에 맞는 한국식 양형기준의 정립

- 양형의 균등화·적정화
 - 다양한 유형의 양형편차 현상을 지양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범죄행위의 불법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구현

- 충실한 양형심리와 양형기준 판례의 형성 촉진
 - 충분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상소심이 판례로써 양형에 관한 기준·지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5. 양형위원회 업무의 추진 방식

- 법령이 규정하는 원칙 준수

- 책임 원칙의 구현 등 법령이 규정하는 원칙을 준수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공개화·투명화 지향

- 양형위원회 업무의 전 과정을 가급적 공개할 예정
- 다양한 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할 예정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양형위원회」 코너를 신설하여 회의자료와 안건, 공청회·토론회 등 위원회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연락처 ♠

Tel) 02-3480-1923 ~ 1925 Fax) 02-3476-8042

E-mail) embo@scourt.go.kr